

#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 추진

관리부 기획팀장 **최 승 덕** 

## 1, 추진경위

○ 89. 4. 18 : 농림부에서 육류도체등급제 시행 기본방침 시달

0'93, 6, 11: 축산법을 개정 축산물등급제 시행
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○' 94, 12, 1 : 축산물등급판정업무를 축협중앙회 로 이관

○' 96. 12. 30 : 축산물등급판정 자립화계획 수립 ○' 90. 0. 7 : 축산법(세계기기의 제제(사리] 법

 O'99. 9.7: 축산법시행규칙을 개정(농림부령 제1345호, 1999.9.7)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수수료 부과 규정 마련(수 수료는 2001.1.1부터 시행)

O'00, 7,1: 동축협통합에 따라 축산물등급판 정업무를 놓협소속으로 이관

0'00,12,29:소 및 쇠고기수입자유화('01,1,1) 와 구제역 발생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등급판 정 수수료 징수시기를 2년 정도 유예

o'01. 1, 26 : 축산법 개정(법률제6381호)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 독립법인 설립 ( 01.7.27)

O'01, 3, 31 : 축산물등급관정소 조직진단 및 재 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한국농촌경 제연구원(KREI) 연구용역 실시

 O' 02, 4, 4: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 발표
·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를 ' 03년 부터 장수하여 2010년에 자립화

## 2. 법잭근거

## 축산법

제28조(축산물의 등급판정)

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가축의 개 량촉진을 위하여 축산물의 품질에 관한 등급판 정을 받은 축산물에 한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 음

제41조(수수료)

②등급판정소는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급판

정을 받고자하는 자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 수된 수수료는 등급판정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교는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가 징 수하여 등급판정소에 납입하여야 된다.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농림부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## 축산법시행규칙

제46조(수수료)

②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수수료 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농 립부 장관이 축종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제47조(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)

-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등급판정신청시 도축장 경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도축장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 신청서에 수수료 납부인을 날인
- ③등급판정소장은 배월 등급판정수수료 납입고지 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에게 송부
- ④도축장 경영자는 고지된 수수료를 등급판정소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(수납기관)에 매월 20일 까지 납입
- (5)수납기관은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, 수납금액을 매월 말일까 지 등급판정소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, 납 입통지서를 등급판정소장에게 송부
- ⑥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경영자가 기간내에 수수 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 하여 납입을 촉구한다.

제48조(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)

- ①등급판정소장은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등급판정 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징수 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 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.

## 3 수수료 징수 필요성

①축산물등급판정사업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이 2001, 1, 1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자유화 됨 에 따라 주재원인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없어짐

#### (축산발전기금 조성 규모)

(단위: 억원)

<b>7</b>	분	'98까지	'99	,00	'01	02(P)
축산물수입이익금		24,794	220	50	13	б
		(60.6)	(15.7)	(1.2)	(0.4)	(0.3)
한 <del>국</del> 마사	회납입금	2,706	532	631	578	1,082
기금운용	용수익금	9,513	1,170	1,004	973	892
농특회계	채입금 등	1,830	530	2,000	1.500	
기	타	2.091	. 5	521	. 8	11
7	4	40,934	1.397	4,206	3,071	1.991

| **2**축산물등급판정은 지난 '89년 이후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계속지원하여 왔으나, 사업이 정착상 택엥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미 약함

○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시행 초기에는 축발기금 으로 전액을 지원하고 제도정착 이후에는 수수 료로 충당기로 계획

#### 〈축산물등급판정사업 연도별 지원액〉

(단위 : 백만원)

89~'90	'91~'99	2000	2001	2002(P)	Л
387	43,235	9.613	13.612	10.917	77,764

#### 〈축산물등급판정 현황〉

(단위: 천두)
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			
구	분	'95	'97	'99	'00	01	02.6	
	도축두수	780	1125	1095	997	729	306	
소	「판정두수	230	1028	1058	993	727	.406	
	비율(%)	30	91	97	99	100	100	
	도축두수	10.178	10.918	12.565	13,293	14,324	7.299	
돼지	   판정투수	4,999	7,546	10,557	11,773	13,817	7.068	
	비율(%)	49	69	84	89	97	97	

#### 〈축산물등급판정 성과〉

(단위:%)

구	분	'93	'97	99	'01	'02.6
소	1 등 급 이 상	10.7	18.4	18.9	29.9	33.8
(한우)	거세비율(출하기준)	0.8	3.9	10.5	20,6	32.5
cil±i.	A·B등급	36.4	44.6	62.4	67.3	68.5
돼지	거세비율(출하기준)	5.1	31.2	79.2	92.6	94.5

- 축산물(쇠고기 · 돼지고기)의 품질 향상
- 축산농가소득 증대
- ·축산물등급별 가격 차등화에 의한 시장차별화 로 국제경쟁력 제고
- ·축산물의 냉장유통체계 구축으로 국내산 축산 물의 소비촉진
- · 축산물의 거래지표제공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
- · 축산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(93년대비 2001년 도 소득 증가 추정)
- <del>한</del>우 790억 (두당 14만4천원)
- 돼지 1,600억원 (두당 1만2천원)
- \*'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 연구자료에 의한 추정

③축산법시행규칙(농림부령 제1345호, '99.9.7) 개정에 의기 2001.1.1부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골 장수하도록 규정

- □ 8 구의도록 판'8 ○소 및 쇠고기 수입의 완전자유화(2001,1,1) 등 축산농가의 어려운 여건을 갑안하여 수수료장 수글 2년간 유보토록 조치하였으나 ○소・돼지등급판정이 정착되어 시기적으로 수수 료 징수가 불가피 합

4 축산발전기금이 1999.12.31부터 기금관리기본 법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사전·사후심의제도 강화 등 경직되게 운용

5축산물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(일본, 미국, 캐나다, 덴마크 등)의 경우 등급판정신청자 또는 출하자로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정수하여 운용

16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결과('01.9)에서도 돼지등급판정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긍정적임○조사대상 농가 4,976호 중 80.5%인 4,008호가 긍정적인 의사표명○등급판정수수료는 500원/두가 61.3%를 나타내고 600원 이상이 28,2% 차지

축산물등급판정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성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견 수수료를 징수하 여 단계적인 자립화 체계 구축이 필요함

## 4. 수수료 징수계획

- ㅇ징수시기: 2003, 1, 1
- ○청구시기 · 2003, 1, 1 ○2003년도 수수료 징수 축종별 수수료징수 원칙 축산물등급판정 장기발전대책에 의한 축종별 수수료 반영 소도체 · 돼지도체 :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
  - 감안하여 수익자가 약 50%. 정부가 50% 수 춘 부당

계란·닭고기 : 신청자가 수수료 부담을 전 제로 등급판정

- 에도 5 H 전 8 ※2003년 재정수요 13,084백만원 중 수수료 6,392백만원, 정부지원 6,692백만원, ○축종별 수수료 정수액 소 또 체 : 2,000원/두 돼지도체 : 400원/두